

사업장의 보건관리

소장 김 문 창

1. 서 언

우리나라에서의 산업보건에 관한 최초의 법적기준은 1953년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6장 안전과 보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산업보건 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독립법의 제정이 요구되어 1981년 12월 산업 안전보건법을 제정공포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3편에 보건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이제까지도 만족할만한 성과와 사업장 작업 환경개선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본인은 일선 산업보건행정을 직접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본 협회지를 통하여 산업보건의 실태와 지도방침 등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 산업보건실태

지난해 모공단의 축전지를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연중독이라는 직업병에 걸렸으며 도금공장에서는 크롬에 의한 비중독증이 걸려 코의 안쪽에 구멍이 생겼다는 소식이 기사화되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직업병이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작업장의 유해요인이나 작업조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불량한 작업환경 하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유해요인은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광

1984년도 건강진단실시결과 질병자 및 조치내역

가. 질병자

총 계	일반 병자							직업성 질환자		
	소 계	순환기 질환	신경 감각기 질환	결핵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기타	소 계	소음성 난청	연중독
1,946	1,913	713	334	515	28	4	319	33	30	3

나. 질병자 조치내역

조치내용	질병명	총 수	질 병 자	
			직업성 질환자	일반 병자
총 수		1,946	33	1,913
취업금지 및 휴직		47		47
작업전환		46		46
근로시간단축		26		26
근무증치료		1,077	5	1,072
기타		750	28	722

산지역에서 일하는 광부의 진폐병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감소되지 아니하고 증가추세에 있어 진폐예방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여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발암성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암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관련학제의 보고서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1984년도에 실시한 당초의 건강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총 1,591개 사업장에서 64,910명의 근로자가 일반 및 특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별표와 같이 수진근로자의 3.0%인 1,946명의 질병자가 발생하여 취업금지 및 휴직,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전국의 직업병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총 6,557명의 유소견자가 발생되었고 2,574명이 직업병자로 판명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커던 것입니다.

3. 산업보건의 지역적 여건

보건관리는 한개인이나 몇 사람만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장 내 보건관리제도를 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책임자를 임명하여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담당자를 지휘감독케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제도로서 안전보건위원회를 두

어 생산현장에 맞는 보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아울러 근로자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부서에는 무슨 유해요인이 있는가를 찾아내어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및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할 사업의 규모와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 바 간단히 소개코자 합니다.

가. 보건관리자

① 배치하여야 할 사업의 규모 및 종류

-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50인 미만 고용사업장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② 전담보건관리자

상시 근로자 1천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는 전담 보건관리자 배치

③ 상시 근로자 1천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있어서의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50인에 대하여 매월 1시간이상 보건관리업무를 보아야 함.

④ 자격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이 있는 의사이어야 함.

나. 보건담당자

① 보건담당자에는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관리 보건담당자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과 개선을 담당하는 산업위생보건담당자가 있으며 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과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나뉘어져 있어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료기관과 연결을 하거나 촉탁계약을 하도록 하여 보건관리를 하고 있으나 벽지나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영세 유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건관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해사업체는 외부에서 잘 안보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대기업에서는 유해작업부서에서 하여야 하는 작업부분을 하청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여기서 일하는 작업자는 보건관리자에 의한 보건관리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더러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건강진단조차도 미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관내에서의 보건관리상황은 배치대상 326개소에 284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미배치 및 신규사업장에 대한 배치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 지도방침 및 대책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작업 환경관리가 작업병예방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작업환경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인자를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며 여기에 연결하여 근로자의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로 구분하여 보건관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의 대상과 예방조치에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주 및 보건관리조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속해있는 작업장에 알맞는 사항을 개발하여 개선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관리의 대상과 예방조치의 관련

		사용에서 영향 까지의 경로	관 리 의 내 용	관 리 목 적	지 표	판단기준
보·건 관 리	환경 관 리	유해물 사용량 ↓ 발생량 ↓ 기증농도	대체 사용형태, 조건 생산공정의 변경, 설비, 장치의 부 하 원격조작, 자동화, 밀폐 국소배기 전체환기 건물구조	발생의 억제 격리 제거	환경 기증 농도	관리농도
	작업 관 리	폭로농도 ↓ 체내침입량	작업장소 작업방법 작업자세 폭로시간 호흡보호구 교육	침입의 억제	생물학 적지표	폭로 정도
	건강 관 리	반응정도 ↓ 건강영향	생활지도 휴양 치료 배치전환	장애 예방	건강 진단 결과	진단기준